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 : 신동욱·안상훈·엄태영

권성동 • 서천호 • 이달희

김승수・이철규・강승규

김 건 · 김상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.

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합계출산율이 0.72명을 기록하였고,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·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 애고,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•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(안 제36조의5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으로, "1주택"을 "주택"으로, "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"을 "가족관계등록부에서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"으로, "면제하고,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하고, 같은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 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4년 1

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36조의5(출산・양육을 위한 주 제36조의5(출산・양육을 위한 주 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 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 ① 2027년 12월 31일-----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 를 출산한 부모(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)가 해당 자 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 산일부터 5년 이내에 「지방세 법」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(출산일 전 |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 ----가족관계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 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 확인되는-----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---면제한다. 제하고,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을 공제한다. 1.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<삭 제>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.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<삭 제>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(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

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